

의안번호	제2026-03호
의안제목	한국전력거래소 정관 개정(안)
제 의 자	이사장 직무대행 김 홍 근
회의일자	2026. 3. 26.(목)
비 고	2026년 제4차 이사회 의결('25.3.19)

1. 의결사항 : 한국전력거래소 정관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
2. 제의근거 : 정관 제45조
3. 제의취지 : 2026년 제4차 이사회('25.3.19)에서 의결한 한국전력거래소 정관 개정(안)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받고자 함
4. 주요 내용

가. 분산사업자의 정회원 자격 범위 확대 및 전력직접거래량에 대한 수수료 납부 의무 부여

□ 개정 배경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개정('25.12)에 따라, 분산사업자는 부족 전력에 대해 전력시장 구매가 가능해짐
- 기존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내 공급 후 남은 전력의 시장 판매만 허용되었으나, 사업자의 선택권 및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부족 전력의 시장 구매가 가능하도록 개선

【 분산에너지법 內 부족 전력의 시장 거래 관련 조문 】

제43조(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 ① (생략)

-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 분산특구 내 분산e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직접거래량에 대한 전력거래수수료 부과 필요
- 거래소는 분산e사업자에게 계량 관리 및 부가정산금 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 전력 직접거래 시에도 전력시장의 일부 기능을 활용하거나 전력계통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장·계통 운영과 관리에 대한 비용 분담 필요

【 전력시장운영규칙 내 분산특구 직접 거래량 수수료 관련 조문 】

제20.4.8조(분산에너지사업자의 수수료) 전력거래소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전력시장 거래분에 대한 전력거래수수료와 분산특구 전력 직접거래의 부가정산금 산정 등에 따른 수수료를 전력 거래량(전력 직접 거래량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 개정 내용

- 분산e사업자의 시장거래 범위 확대를 반영한 정회원 자격 정비 등(제9조)
 - 기존에는 초과 전력의 시장 거래 분산e사업자만 정회원으로 규정했으나, 분산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부족 전력의 시장 거래 내용 추가(제9조제1항)
 - 관련 고시 조문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문구 정비(제9조제2항)
- 분산e사업자의 전력직접거래 수수료 납부 의무 부여 및 산출량 대상 포함(제12조)
 - 전력거래수수료 납부 대상에 준회원 분산e사업자* 추가(제12조제1항 단서)
 - * 전기판매사업자(한전)와 과부족 전력을 거래하는 분산e사업자
 - 전력거래수수료 산출량에 분산e사업자의 전력직접거래량 추가(제12조제3항)

나. 설비용량 20MW 이하 정회원에 대해서도 신규 설비를 봉인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연회비 면제 대상에서 제외

□ 개정 배경 [붙임 1] 참조

- 전기사업법 제40조 및 전력거래소 정관 제12조에 따라 전력거래소 정회원은 필요경비 충당을 위해 연회비 납부 의무가 있으나, 설비용량 20MW 이하 정회원에 대하여는 면제하고 있음('14.10.8 정관 개정)

【 연회비 면제 대상 】

1. 거래소 등록 발전설비용량이 2만kW 이하인 발전사업자,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
2. 거래소 등록 수요반응자원의 의무감축용량이 2만kW 이하인 정회원 수요관리사업자
3. 준회원 수요관리사업자
4.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5.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 최근 소규모 전력설비 시장 진입 확대로 계량설비 봉인비용 증가에 따라 거래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휴일 봉인요청에 대해 예산제약으로 인해 수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량봉인 당해연도에 한하여 연회비 면제 기준의 조정이 필요

□ 개정 내용 (제12조)

- 연회비 면제 대상을 설비용량 2만kW 이하인 발전사업자 회원으로 유지하되, 신규 설비의 거래개시를 위한 봉인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연회비 면제 기준에서 제외하여 당해연도 연회비 부과
- 적용시점 : 2026년 7월 계량설비 봉인하는 회원부터 적용

붙임: 1. 한국전력거래소 연회비 부과기준 변경(안) 검토내용
2. 한국전력거래소 정관 제21차 개정(안) 신규 조문 대비표

붙임 1 한국전력거래소 연회비 부과기준 변경[안] 검토내용

1. 배경

- 전력거래소 정회원은 필요경비 충당을 위해 거래수수료, 등록비 및 연회비 납부 의무가 있으나, 20MW 이하의 경우 등록바연회비 면제('14년~)
- 최근 소규모 발전기 확대에 따른 계량설비 봉인비용 증가가 거래수수료 인상 요인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소규모 발전사의 휴일 봉인 등 민원을 예산제약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어려움 발생
- 따라서, 거래수수료 인상 완화, 휴일 봉인 시행 등 회원사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소규모 회원사의 연회비 면제 기준을 일부 보완코자 함

2. 전력거래소 필요경비 충당 및 연회비 납부 기준 현황

- 필요경비 충당방식

구 분		부담 여부	KPX 필요경비	
등록비	20MW이하	X	인 건 비	
	20MW초과	○	개 발 비	
연회비	20MW이하	X	계량봉인비	
	20MW초과	○	회 의 비	
거래수수료	20MW이하	○	출 장 비	
	20MW초과	○	기 타	

- 現 연회비 납부기준 및 '25년 납부현황 : 용량별로 차등

구분		납부 기준		납부 현황('25년)	
		등록용량	금액	회원사수(개)	금액(만원)
정 회 원	❶ 판매사업자	-	5,000만원	1	5,000
	❷ 직접구매자	-	100만원	0	0
	❸ 발전사업자 ❹ 구역전기사업자 ❺ 분산에너지사업자	20MW 이하	면제	6,503	0
		~500MW 이하	100만원	134	13,100
		500MW 초과	100MW당 50만원씩 상향 (5,000만원 한도)	30	43,000
	❻ 자가용설비설치자	발전사와 동일	등록용량의 50% 적용	5	1,300
	❼ 준회원	-	100만원	2	100

3. 계량설비 봉인 예산 확보 방식

□ 거래수수료 : 봉인 실적비용을 단가 산정시 반영하여 확보

- 연간 예상운영비에 거래수수료 단가산정 시점의 봉인 물량 및 단가 반영

$$\text{거래수수료} = \text{예상 연간 운영비} \div [\text{예상 연간 전력거래량(kWh)} \times 2]$$

- 예상 연간 운영비 : 인건비, 용역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수선유지비, 차입금 등 비용
- 예상 연간 전력거래량 : 전년도 총 전력거래량 × (1 + 예상 전력수요 증감률)

□ 등록비 및 연회비 : 일괄 산정 후 필요경비 항목별 배정

4. 계량설비 봉인 및 예산집행 관련 애로사항

① 수수료 단가에 반영된 비용대비 지출 증가로 예산부족 심화

- 최근 5년 동안에 연 최대 5.7억원, 연평균 약 3.3억원 예산부족

(단위: 백만원)

구 분	'21	'22	'23	'24	'25
단가 반영금액(A)	138	703	703	703	900
지출금액(B)	703	770	828	1,076	1,416
과부족(A-B)*	△565	△67	△125	△373	△516

* 부족금액은 등록비·연회비에서 총당 등 예산 조정을 통해 확보

(주요원인) ①소규모 신규 발전설비 봉인물량 증가 ② 봉인 위탁단가 상승

- 최근 5년간 계량설비 봉인실적의 약 65%가 20MW이하에서 발생되고 있음

(단위:건)

구 분	'21	'22	'23	'24	'25*	합계
전체 봉인	1,778	2,133	2,013	2,196	2,452	10,572(100%)
신 규	신규 전체	1,331	1,544	1,264	1,308	6,896(65.2%)
	20MW 이하	1,326	1,533	1,243	1,438	6,821(64.5%)

* '25년 계약 진행 중('25.8.4~'26.8.3)으로, 기성 일정에 비례한 추정값 산출·반영

- 인건비 상승 등 영향으로 봉인 위탁단가 상승 : 40만원('21) → 57만원('25)

② 회원사의 봉인 관련 서비스 확대 요구에 적극적 부응 불가

- 최근 일부 발전소 현장에서 휴일 봉인 요청이 증가(3건('24), 17건('25))
- 봉인은 정전 상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주중 정전 불가 등 사유로 휴일 봉인을 요청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회원사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못함

③ 잦은 거래수수료 인상으로 기존 회원사의 부담 증가

- 전력거래소 운영경비 증가로 인해 재무적 적자가 발생하면서 최근 4년간 2차례에 걸쳐 거래수수료를 인상한 바 있음(2022년, 2025년)
- 계량설비 봉인비용 증가도 전력거래소 적자 원인의 일부에 해당

5. 개선(안)

□ 20MW 이하 회원사의 연회비를 조건부 면제방식으로 정관 변경

- (현행) 최초 등록 시부터 전력거래 기간 동안 전액 면제
- (개선) 당해연도 신규 봉인이 없을 경우 연회비(100만원) 전액면제(현행동일),
신규설비 봉인 시 당해연도 연회비에서 일정금액(설비용량별 차등) 면제

□ 등록용량 구간 세분화를 통한 연회비 부과의 합리성 제고

- 신규봉인이 발생하여 해당연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20MW 이하 정회원에 대하여 연회비 납부기준 등록용량 구분을 세분화
- 휴일 봉인시에는 위 연회비 기준에서 50%를 가산하여 산정하며, 이미 한전과 전력거래를 하고 있는 기존 설비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 연회비 기준에서 50%를 감경하여 산정함

□ 20MW 이하 정회원의 경우 연회비 상한금액(100만원) 설정

- 휴일 봉인 등의 사유로 총 연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회비 상한금액(100만원)만 부과하여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연회비 부담 경감

[연회비 부과 기준 변경(안)]

구 분		등록용량	연회비			
			현행	개정(안)		
정회원	판매사업자	-	5,000만원	좌동		
	직접구매 전기사용자	-	100만원	좌동		
	직접구매자, 발전사업자 구역전기 사업자, 분산에너지 사업자	20MW이하	<신설>	500kW미만	40만원	-100만원 한도 -당해연도 신규 설비봉인 없을시 전액면제
				500kW이상 1MW미만	60만원	
				1MW이상 10MW미만	80만원	
				10MW이상 20MW이하	100만원	
	20MW초과 500MW이하	100만원	좌동			
	500MW 초과	100MW 증가시 마다 50만원씩 증가 (5,000만원 한도)				
자가용 설비 설치자	등록용량의 50%에 대해서 발전 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와 동일 부과기준 적용		좌동			
준회원	-	100만원	좌동			

※ 단, 등록용량 20MW 이하 회원의 경우 ①주말 및 휴일 봉인시 연회비의 50%를 가산하며 ②이미 한전과 전력거래를 하고 있는 기존 설비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회비의 50%를 감경함

6. 기대효과

☐ 거래수수료 인상 요인 완화 등 회원사 부담 경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신규 설비 봉인비용 적기 회수를 통해 기존 회원사 거래수수료 인상요인 완화 등에 기여

구분	변경 前		변경 後	
	20MW이하	20MW초과	20MW이하	20MW초과
연 회 비	x (미부담)	o (부담)	o (부담)	o (부담)
전력거래수수료	o (부담)	o (부담)	o (부담)	o (부담)
소규모 신규 봉인비용 부담주체	기존회원 부담 (교차보조)		신규회원 부담(100만원 한도) (기존회원 부담완화)	

☐ 회원사 서비스 품질 제고 및 발전사업 적기 개시로 사업지원

휴일 봉인 등 신속한 민원해결을 통해 회원사에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적기 발전사업 개시를 통해 수익성 제고에 기여

☐ 전력거래소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재무건전성 향상

붙임 2

「한국전력거래소 정관」 제21차 개정(안)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2025. 12. 17. 부분개정(20차)]	개 정 (안) [2026. 00. 00. 부분개정(21차)]	개정 사유
제9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 8. (생략) 9. 분산에너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안에서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동조 제2항에 따라 <u>남는 전력</u>을 전력 시장에서 거래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 ②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 9. (생략) 10. 분산에너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안에서 <u>전기사용자에게 직접</u> 전기를 공급하고, 동조 제2항에 따라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	제9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 8. (생략) 9. 분산에너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안에서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동조 제2항에 따라 <u>부족하거나 남는 전력</u>을 전력 시장에서 거래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 ②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 9. (생략) 10. 분산에너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안에서 <u>직접 전기사용자에게</u> 전기를 공급하고, 동조 제2항에 따라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	· 분산에너지법 개정 사항 반영 · 병렬 조문의 문언을 통일하여 명확성 제고

현 행 [2025. 12. 17. 부분개정(20차)]	개 정 (안) [2026. 00. 00. 부분개정(21차)]	개정 사유
제12조(등록비 등) ① 정회원은 등록비, 연회비 및 전력거래수수료를, 준회원은 등록비 및 연회비를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준회원 중 제9조제2항제7호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u>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u>는 전력거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회원에 대하여는 등록비 및 연회비를 면제한다. 1. 거래소 등록 발전설비용량이 2만kW 이하인 발전사업자,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 2. 거래소 등록 수요반응자원의 의무감축용량이 2만 kW 이하인 정회원 수요관리사업자 3. 준회원 수요관리사업자 4.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제12조(등록비 등) ① 정회원은 등록비, 연회비 및 전력거래수수료를, 준회원은 등록비 및 연회비를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준회원 중 제9조제2항제7호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u>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제9조제2항제10호의 분산에너지사업자</u>는 전력거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회원에 대하여는 등록비 및 연회비를 면제한다. <u>다만, 전력거래를 위한 최초 계량설비 봉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u> 1. 거래소 등록 발전설비용량이 2만kW 이하인 발전사업자,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 2. 거래소 등록 수요반응자원의 의무감축용량이 2만 kW 이하인 정회원 수요관리사업자	· 과부족 전력 한전거래 분산사업자를 수수료 납부 대상에 추가 · 연회비 면제 회원 경우 신규 계량설비 봉인비용을 고려하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거래수수료 인상요인 완화, 봉인 서비스 품질 제고 및 기관 예산 적기 충당하기 위함

현 행 [2025. 12. 17. 부분개정(20차)]	개 정 (안) [2026. 00. 00. 부분개정(21차)]	개정 사유
5.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 판매사업자 ③ 전력거래수수료는 전력시장의 전력거래량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u>직접전력거래량에</u> 일정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준회원 수요관리사업자 4.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5.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③ 전력거래수수료는 전력시장의 전력거래량,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량 <u>및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직접거래량에</u> 일정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분산e사업자의 직접 거래량을 수수료 산출 대상 거래량에 추가
-	부 칙 (2026.0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00.00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② 의 개정 정관은 2026.7.1부터 시행한다.	-